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“행위”를 “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개임”을 “교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”을 “대리인을 바꿀 것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”을 “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

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.

제94조(특허권의 효력) (생략)

<신설>

④ -----
-----대리인의
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
에는-----

-----.

제94조(특허권의 효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.